

NOTICE OF ACTION

(Continued)

COUNTY OF _____

STATE OF CALIFORNIA
HEALTH AND HUMAN SERVICES AGENCY
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

통지일 : _____
 해당자 이름 : _____
 번호 : _____

귀하는 해당 분기의 수입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셨습니다.

달	_____	
달	_____	
달	_____	

매달 현금 보조 액수

A 항. 셀 수 있는 소득	
총 자영업 소득.....	\$ _____
자영업 지출:	
a. 40% 기준.....	- _____
또는	
b. 실제.....	- _____
자영업으로부터의 순수 소득.....	= _____
장애 기반 총 불로 소득 (보조 부분 + 비보조 부분 구성원).....	\$ _____
\$225 무시.....	- _____
비면제 장애 기반 불로 소득.....	= _____
또는	
\$225 무시 중 사용되지 않은 액수.....	= _____
총 근로 소득.....	\$ _____
자영업으로부터의 순수 소득(상기 액수).....	+ _____
소계	= _____
\$225 무시 중 사용되지 않은 액수(상기 액수).....	- _____
소계	= _____
근로 소득 50% 무시.....	- _____
소계	= _____
비면제 장애 기반 불로 소득 (상기 액수).....	+ _____
기타 비면제 소득 (보조 부분 + 비보조 부분 구성원).....	+ _____
	+ _____
순수 셀 수 있는 소득.....	= _____

B 항. 귀하의 현금 보조

1. 최대 보조 _____ 명 (보조 부분 + 비보조 부분 구성원).....	\$ _____
2. 특별 필요 (보조 부분 + 비보조 부분 구성원).....	+ _____
3. A 항의 순수 셀 수 있는 소득.....	- _____
4. 소계.....	= _____
5. 최대 보조 _____ 명(보조 부분만) (MFG 또는 징벌된 사람 제외).....	\$ _____
6. 특별 필요(보조 부분만).....	+ _____
7. 최대 보조 소계.....	= _____
8. 달 전체 보조 소계 (4 라 또는 7 라 중 낮은 액수).....	= _____
9. 조정: 25% 자녀 양육비 벌금.....	- _____
초과 지급액.....	- _____
Cal-Learn 벌금.....	- _____
Cal-Learn 보너스.....	+ _____
10. 매월 현금 보조 액수 (8 라 조정).....	= _____

당신의 청문회 권리

만약 카운티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당신은 청문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. 청문회 요청은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. 이 90일은 카운티가 이 통보를 주거나 발송한 날부터입니다.

만약 당신이 현금보조, 의료보조, 식량보조 또는 아동부양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청문회를 요청하면:

- 당신의 현금보조나 의료보조는 청문회를 기다리는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.
- 당신의 아동부양 보조는 청문회를 기다리는 동안 유지될 것입니다.
- 당신의 식량보조는 청문회나 배급권 기한 만료중 먼저 오는 날 까지 유지될 것입니다.

만약 청문회의 결정이 우리가 옳았으면 당신은 초과 지급된 현금보조, 식량보조나 아동부양 보조등을 갚아야 됩니다.

당신의 혜택을 청문회 전에 내려 주기를 원하면 아래 칸에 표시하십시오: 예, 삭감 또는 정지: 현금보조 식량보조 아동부양 보조

당신이 아래 사항들에 대한 청문회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: 복지에서 근로로(Welfare to Work):

당신은 활동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당신은 이 통보 이전에 카운티에서 승인한 활동이나 고용을 위해 아동부양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만약 우리가 당신의 보조가 정지된다 했으면 당신이 활동에 참여한다 해도 아무런 보조도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입니다. 만약 우리가 당신의 보조가 지급된다 했으면 이 통보에 적힌 액수와 방법대로 지불 될 것입니다.

- 그런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카운티에서 지정한 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.
- 만약 청문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카운티에서 지불하는 보조액이 활동에 참가하기에 너무 부족하면 그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교육보조(Cal-Learn)

- 우리가 당신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으면 당신은 교육보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- 우리는 인가된 활동에 대해서만 교육보조비를 지불합니다.

기타 정보

의료보조 관리계획 회원 (Medi-Cal Managed Care Plan Members): 이 통보의 조치는 당신의 관리 건강계획으로부터 보조를 중단시킬 것입니다. 질문이 있으면 건강 관리 계획부에 문의하십시오.

아동부양 그리고/또는 의료보조: 지역 아동부양 요원이 당신이 현금보조를 받지 않는다 해도 무료로 보조금을 받아줄 것입니다. 만약 그 들이 보조금을 받아주고 있으면 당신이 서면으로 정지시키지 않는 한 계속할 것입니다. 그 들이 현재 보조금은 받아 주지만 카운티가 밀린 지난 보조금은 그 들이 갖게 될 것입니다.

가족 계획: 당신이 원하면 복지 사무소에서 정보를 드릴 것입니다.

청문회 접수: 당신이 청문회 신청을 하면 주 청문국은 서류를 작성할 것입니다. 당신은 청문회 전에 이 서류를 볼 권리가 있으며 당신의 케이스에 대한 카운티의 입장을 청문회 최소한 이틀 전에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주 정부는 당신의 청문회 서류를 복지과, 보건과, 인문 봉사부 그리고 농무성에 줄 수도 있습니다. (W&I Code Sections 10850 and 10950.)

청문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:

- 이 페이지를 기재하십시오.
- 당신의 기록을 위해 이 페이지의 전 후면을 복사해 놓으십시오. 담당자에게 말하면 이 면의 앞 페이지를 복사해 줄 것입니다.
- 아래 주소로 가져가거나 보내십시오:

또는

- 무료전화: 1-800-952-5253 을 사용하거나 청각 또는 언어 장애자는 TDD 1-800-952-8349 를 이용하십시오.

도움 청하기: 당신은 위의 전화 번호로 청문회에 관한 당신의 권리나 법적 도움을 알선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. 당신은 지역 법률 상담소나 복지사무소로부터 무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만약 당신이 청문회에 혼자 가고싶지 않으면 당신의 친구나 다른 사람을 데려갈 수 있습니다.

청문회 신청서

나는 _____ 카운티의 복지과에서 취한 하기의 사항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청문회를 신청합니다.

- 현금보조 식량보조 의료보조
 기타 (서술하십시오) _____

이유 설명: _____

공간이 더 필요하면 여기에 표시하고 다른 페이지를 첨부하십시오.

나는 주 정부에 무료 통역관 제공을 의뢰합니다.
(친지나 친구는 청문회에서 당신의 통역관이 될 수 없습니다)
나의 언어 또는 방언: _____

혜택이 거절, 변경 또는 정지된 사람의 성명

생년 월일 _____ 전화 번호 _____

주소 _____

시 _____ 주 _____ 우편 번호 _____

서명 _____ 일자 _____

서류 작성자 성명 _____ 전화 번호 _____

나는 하기한 사람이 이 청문회에서 나를 대표하기 원 합니다. 나는 이 사람이 나의 기록을 보거나 내 대신 청문회에 갈 것을 허락합니다. (이 사람은 친구나 친척일 수 있지만 통역을 할 수는 없습니다.)

이름 _____ 전화 번호 _____

주소 _____

시 _____ 주 _____ 우편 번호 _____